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71
----------	-----

2019년 4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안일 : 2019년 3월 29일
- 다. 회부일 : 2019년 4월 3일
- 라. 상정일 : 제28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4월 22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재무국장 하철승)

가. 제안이유

-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시세감면과 관련하여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2019. 7. 1. 시행)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가. 주요내용

- 장애등급제 폐지('19. 7. 1.) 이후에도 종전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현행 감면제도 유지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감면대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 다. 입법예고 (2019. 2. 14. ~ 3. 6.) 결과: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¹⁾에 따라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현행 조례의 감면 대상자 요건이, 「장애인복지법」 개정(2019.7.1. 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급)으로 포괄 규정된바, 현행 시각장애등급 4급에 대응하는 별도 감면 기준을 마련하여 시세 감면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항).

<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 >

현행	개정안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 (이하 생략)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등록 당시 장애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법률 제15270호 「장애인복지법」의 시행일(2019년 7월 1일) 전에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감면받고자 하는 세목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해당 장애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 한다]이 … (이하 생략)
<신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신설>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본 개정안은 전국 공통으로 운영되는 조례상 감면으로써 행안부 및 시·도실무회의(18.10., 19.1.)에서 종전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별도의 분류기준이 마련된 것임.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하 생략)

※ 현행 장애등급 1~3급까지의 장애인용 자동차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사항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7조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음.

※ 본 조항 감면 기한: 2021년 12월 31까지.

- 「장애인복지법」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에 따라, 현행 “장애 등급(1급~6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을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정되었음.²⁾

〈장애등급제(1급~6급)를 폐지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19.7.1.)〉

- 종전 1~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종전 4~6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한편, 본 조례의 근거법인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³⁾」에서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시세 감면 요건을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개정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중증(1~3급)·경증(4~6급)으로 구분함으로써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사회적 혜택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측면을 감안하여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제정(1994. 12. 31.) 당시부터 현재까지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경증 장애인에게도 시세 감면을 확대 운영 해오던 사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으로 장애인 권익보호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제2조 제10항에 따라 타법개정을 사유로 2019.7.1.자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이 일괄 반영 예정임.

※ 시각장애등급 4급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전국 공통으로 운영되고 있음.

2) (시행 2019.7.1., 법률 제15270호, 2017.12.19., 일부개정)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중간 생략)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 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상[별표1]장애등급(정도)표>

현 행	개정안 ('18.8월 입법예고)
<p>[별표 1] <개정 2015.8.3.> <u>장애인의 장애등급표</u>(제2조 관련)</p> <p>3. 시각장애인</p> <p>제1급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p> <p>제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p> <p>제3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p> <p>제4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p> <p>제5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이상 감소한 사람</p> <p>제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p>	<p>[별표 1] <개정 2019.7.1.> <u>장애인의 장애 정도표</u>(제2조 관련)</p> <p>3. 시각장애인</p> <p>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p> <p>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p> <p>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p> <p>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p> <p>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p> <p>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p> <p>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이상 감소한 사람</p> <p>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p>

- 다만, 본 개정조례안이 ①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도 장애정도의 경·중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여 중증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우대하려는 법령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② 여러 장애유형 중에서 유독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에게만 시세 감면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는 아닌지, ③ 비록 소액이지만, 2018년도에 1억 3천만원(985건)의 감면 효과를 감안해 볼 때 지방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운영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려는 현 추세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지방세지출을 지방예산제도의 범위내로 흡수하여 세입·세출과 동일하게 예산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지방세지출 예산제도 도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12.)

<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 시세 감면 현황(최근3년)> (단위 : 백만원)

구분		'16년	'17년	'18년
합 계	인원(명)	734	517	545
	건수(건)	1,233	930	985
	금액(백만원)	161	135	130
취 득 세	인원(명)	23	20	13
	건수(건)	23	20	13
	금액(백만원)	23	29	20
자동차세	인원(명)	711	497	532
	건수(건)	1,210	910	972
	금액(백만원)	138	106	110

<서울시 장애인수_유형별_등급별_통계청> (단위 : 명)

구분	장애 유형별	2017년도										
		개정전	장애 등급	1급	2급	3급	장애 등급	4급	5급	6급		
		개정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총계	소계	1급	2급	3급	소계	4급	5급	6급		
서울 특별시	합계	391,753	151,415	33,047	52,908	65,460	240,338	57,984	82,538	99,816		
	지체	185,424	35,959	5,161	9,451	21,347	149,465	35,294	54,075	60,096		
	시각	41,995	9,279	6,423	1,050	1,806	32,716	2,143	3,243	27,330		
	청각·언어	45,244	13,788	952	6,878	5,958	31,456	10,753	13,233	7,470		
		3,252	1,581	19	309	1,253	1,671	1,669	1	1		
	지적	25,654	25,654	6,775	8,324	10,555	0	0	0	0		
	뇌병변	42,287	27,139	9,724	8,462	8,953	15,148	5,256	4,973	4,919		
	자폐성	5,401	5,401	2,360	2,165	876	0	0	0	0		
	정신	16,326	16,326	307	3,954	12,065	0	0	0	0		
	신장	16,131	12,276	899	11,366	11	3,855	125	3,730	0		
	심장	1,154	949	16	141	792	205	14	191	0		
	호흡기	2,130	2,093	321	592	1,180	37	0	37	0		
	간	2,323	211	49	66	96	2,112	60	2,052	0		
	안면	398	193	16	69	108	205	187	18	0		
	장루·요루	2,794	239	0	19	220	2,555	1,782	773	0		
뇌전증	1,240	327	25	62	240	913	701	212	0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71
----------	-----

제출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시세감면과 관련하여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19. 7. 1. 시행)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애등급제 폐지('19. 7. 1.) 이후에도 종전 시각장애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현행 감면제도 유지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면대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 (2019. 2. 14. ~ 3. 6.)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첨부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등록 당시 장애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 유공자등은 제외하며, 법률 제15270호 「장애인복지법」의 시행일인 2019년 7월 1일 전에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감면받고자 하는 세목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해당 장애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 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

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p>	<p>제3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등록 당시 장애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법률 제15270호 「장애인복지법」의 시행일인 2019년 7월 1일전에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감면받고자 하는 세목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해당 장애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p>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3)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재무국 세제과 정주영(2133-3357)